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람	기 관 의 장

시 보

제2560호

2026년 11월 6일 (금)

차 례

고시 · 공고

○ 파주시 고시 제2026-443호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····· 1
○ 파주시 공고 제2026-2831호 소하점용허가 공고 ····· 2
○ 파주시 공고 제2026-2852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보 공시송달 ···· 3

회람									

발 행 : 파 주 시

파주시 고시 제2026-443호

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

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3,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(농지성토)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"사고지"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11월 6일

파 주 시 장

1. 고시취지: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변경(절·성토 등)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곡리 447-4, 448-1번지에 대하여 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4에 따라 "사고지(불법성토)로 등재함.

2. 사고지 조서(지역·지구 등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등)

구분	명칭	위치	지목	면적(㎡)	비고
1	사고지 (불법성토)	조리읍 장곡리 447-4, 448-1	답	2,905	농지불법성토

3. 고시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: 고시일로부터
4.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: 원상복구 완료시
5. 사고지 도면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"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·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로 지형도면자료 생략

파주시 공고 제2026-2831호

소하천점용허가 공고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6일

파 주 시 장

하천명	점용자	점용자 주소	목적·개요	점용위치	면적(㎡)	점용기간
내동천	래○○ 주식회사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39	하수관로 정비공사 임시 적치장	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191	405	'26.10.01.~ '28.03.08.
상평동천	파주시장 하수도과	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-11	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	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34-1 외 2필지	18.61 (일시 117.46)	'26.10.12.~ 영구점용
내동천	파주시장 하수도과	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-11	분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	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34-14번지 외 4필지	8.93 (일시 74.35)	'26.10.12.~ 영구점용
전흥천	조○○	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50	배수관매설	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732번지 외 1필지	8	'26.10.13.~ 30.12.31.
문발천	파주○○○ ○○○○	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13-1	비상급수관	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358-3번지 외 2필지	95	'26.10.23.~ '28.04.12.
			중로2-76호선	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358-3번지 외 2필지	555	'26.10.23.~ '28.04.12.
			차집관로	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757번지	155	'26.10.23.~ '28.04.12.

파주시 공고 제2026-2852호

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보 공시송달

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「하천법」제69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하고자 하였으나,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1. 공 고 명: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11. 6.(금) ~ 11. 23.(월) (17일간)
3. 공고장소: 시보 및 홈페이지
4. 법적근거:「하천법」제33조 및 제69조,「행정절차법」제21조
5. 공시송달 대상: 붙임 참조
6. 고지사항

가.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「행정절차법」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「하천법」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며,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관련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나.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.

7. 의견제출: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'26. 11. 23.(월)까지 제출(방문 또는 우편)
   - 주 소: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, 2층 하천관리과 (물순환시스템수처리장)
8. 문 의 처: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행정팀(☎ 031-940-5064)

2026년 11월 6일

파 주 시 장